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0190 손해배상(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소22482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C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D'라는 서체프로그램(여기에는 'E 서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2018. 6.경 원고의 허락 없이 서울 광진구청에서 진행한 H 행사의 포스터 디자인에 기재된 'I' 중 'J' 및 'K'이란 문구를 만들면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개인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판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상업적인 용도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L 측에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상 타인의 블로그에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홈페이지에 개인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판매한다고 기재해 놓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고소로 피고가 2018. 12.경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로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이용계약에서 정한 PC 1대 당 구입비용 3,700,000원 중 3,300,000원(= M License 2,200,000원 +



E License 1,1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명시적 일부 청구).

2) 판단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구입비용은 원고가 제작한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사용하는 기본계약에 위 서체를 직접 판매 목적의 이미지 제작이나 홈페이지 이미지 제작, 광고·홍보용 이미지 및 광고배너 등에 사용하는 추가 사용계약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통



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적법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은 원고가 유료로 판매하는 수백 가지의 서체 가운데 하나의 서체에 불과하고 그 서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문구만을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의 저작권 침해 경위, 방식과 태양, 침해 기간,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등에 나타나는 불법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정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2. 7. 14.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04

재판장 판사 오덕식

 판사 조규설

 판사 신신호